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1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742번길42 (화계동), 본사 3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2021년도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인감증명서, 위임장(주주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신분증

5. 기타
 - 정관 일부변경(안)
 - 사외이사 인적사항
 - 감사 인적사항
 - 임원 보수 한도 금액
   홈페이지(http://www.yujintechnology.com)우측상단 **Community 클릭 공시정보** 확인

2021년 08월 20일

주식회사 유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여 현 국 (직인생략)

위 임 장

본인은 2021년 9월 6일에 개최하는 주식회사 유진테크놀로지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 사람에게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아 래 -

<table>
<tr><td rowspan="2">1.</td><td rowspan="2">위임 받는 자</td><td>이 름</td><td colspan="3"></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2.</td><td>소유주식 수</td><td colspan="4"></td></tr>
<tr><td>3.</td><td>의결권 있는 주식 수</td><td colspan="4"></td></tr>
<tr><td>4.</td><td>위임할 주식 수</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5.</td><td colspan="5">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td></tr>
<tr><td>구 분</td><td>목적사항</td><td>찬성</td><td>반대</td><td>기권</td></tr>
<tr><td>제1호 의안</td><td>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td><td></td><td></td><td></td></tr>
<tr><td>제 2호 의안</td><td>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td><td></td><td></td><td></td></tr>
<tr><td>제 3호 의안</td><td>감사 선임 승인의 건</td><td></td><td></td><td></td></tr>
<tr><td>제 4호 의안</td><td>임원 보수 한도 승인</td><td></td><td></td><td></td></tr>
</table>

2021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 주 명 : (인감날인)

[별첨1]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조(목적)	**제2조(목적)** 1. 2차전지 부품·부품 제조업 1. 페패터리 수집,운반, 재활용업	사업목적추가
제3조(본점의 소재지)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단,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해외법인 추가 단서조항 삭제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kryjt.com)에 한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yujintechnology.com)에 한다.	홈페이지 변경
제6조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0,000주로 한다.	**제6조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표준정관 준용
제8조(주식의 발행과 주권의 종류) ③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위와 다른 종류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주식의 발행)**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단서조항 삭제 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
(신설)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
제8조(주식의 발행과 주권의 종류) **(신설)**	제9조 【주식의 종류】 ③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	종류주식 한도 추가
제9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정한다. ⑤ 제②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증권시장 기업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회사에게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삭제) (삭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3자배정 신주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0%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공개 주관회사에 대한 신주배정이 가능하나,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권고하였음 표준정관 준용하여 삭제 표준정관 준용 삭제
제9조의2【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⑤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⑤항 삭제**	전환주식 관련 내역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삭제
제9조의4【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소정의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4【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②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후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합병 4.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5. 법 제3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7. 자본감소 8. 회사의 해산 9. 회사의 조직변경	한도에 관한 내용은 제 9조3항에 기재하였기에 삭제 표준정관에 준하여 수정 의결권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조항 추가
제9조의6 【전환주식】 **(시설)** ②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환할 수 있거나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거나 또는 양자를 혼합한 형태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2.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주식 1주에 보통주식 1주인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비율 및 전환비율 조정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전환의 사유는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한다. 가. 회사가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 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제9조의6 【전환주식】** ②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정구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1.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2. 특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3.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4.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가를 1월 이상 상회하는 경우 ③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환할 수 있거나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거나 또는 양자를 혼합한 형태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2.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주식 1주에 보통주식 1주인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비율 및 전환비율 조정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전환의 사유는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한다. 가. 회사가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 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삭제)**	표준정관 준용하여 회사가 전환 여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조항 추가

4.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5. 전환주식의 청구기간은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 전환기간 이내에 전환이 청구되지 아니하면 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6. 전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신설)**	4. 전환주식의 청구기간은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 전환기간 이내에 전환이 청구되지 아니하면 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7 【주식매수선택권】 **(삽인)**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표준정관 준용
제10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삭제)**	표준정관 준용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삭제)**	표준정관 준용
제12조【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3조【주식의 양도】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서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삭제)**	
제14조(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 취급규칙에 따른다. ③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등의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등의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
(신설)	**제16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
제16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 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삭제)**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 사업 년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 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때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점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①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정관 준용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정관 준용

(신설)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10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58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제①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표준정관 준용
(신설)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표준정관 준용
(신설)	**제21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표준정관 준용
(신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	표준정관 준용
20조【소집시기】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 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는 이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23조【소집시기】** 본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표준정관 준용
(신설)	**제24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정관 준용
제21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10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회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①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상법」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준정관 준용
(신설)	**제26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표준정관 준용
제22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들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정관 준용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한 주식의 종류에 따른 의결권 수에 따른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표준정관 준용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②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2. 수권자본의 증가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방법,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4.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수 5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6. 자본의 감소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8.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표준정관 준용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34조【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30조(이사의이사의 원수 및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이사의이사의 원수 및 선임)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38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이사의 의무】	**제39조【이사의 의무】**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상법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상법 399조에 의한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34조【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45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5조【대표이사의 직무 및 권리대행】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며, 이에 해당하는 이사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3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본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보상금을 제외)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연간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 전 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재임 중 사망한 이사에 대한 유족보상금은 연간 2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산재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 규정에 의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여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때는 그 이사가 회의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때는 그 이사가 회의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제②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②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실무임원】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임원(상법상 등기이사 또는 등기감사가 아닌 이사 또는 감사로서 등기임원 및 이사회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명 등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한다.	**삭제**	
제40조의3 삭제【직무발명 보상】 특허법, 발명진흥법 및 국가법에 근거하여 임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한다.	**삭제**	
제41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상법 제409조에 따라 감사의 기능을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담당한다.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1조【감사의 수와 선임】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감사의 선임과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③항 및 제④항의 감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	**제49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나이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본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제외)는 연간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② 퇴직한 감사의 퇴직금은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 전 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재임 중 사망한 감사에 대한 유족보상금은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산재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47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감사는 회일 1주전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정기총회에 승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 전부터 본 회사의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①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간 전까지 감가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정기총회에 승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⑤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⑥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⑤항 또는 제⑥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7조 【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1조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할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삭제)**	
(신설)	**제58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시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①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제9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2조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을 본 회사에 귀속한다.	**(삭제)**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 한다.	

[별첨2]

사외이사 선임의 건(안)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3년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남창현 (1953.08.28.)	1977년 인하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981년 단국대학교 화학공학 석사 2000년 단국대학교 공업화학과 박사 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지원과장 전) 산업자원부 독일상무참사관 전) 지식경제부 국장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전) 충북도청 정무특보 현) 충북과학기술포럼 회장 현) 충북대학병원 연구교수 현) 국가과학비지니스벨트위원회 위원	이사회	해당사항없음	해당없음

[별첨3]

감사 선임의 건(안)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3년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김수정 (1986.01.25.)	2006년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학사 2008년 카이스트 무선통신 전공대학원 석사 2018년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촉연구원 전) 법무법인 세범 구성원변호사 현) 법무법인 청품로펌 구성원변호사	이사회	해당사항없음	해당없음

[별첨4]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안)

2016년 4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규정의 승인 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봐 금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2021년도 임원 보수 한도를 승인받고자 함

직 위	월간급여한도
대표이사	4천만원 이내
부대표이사	3천5백만원 이내
이사	3천만원 이내
감사	2천5백만원 이내